

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주민등록번호(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)		
	주소				
상 호 (법인명)					
사무소 소재지	(전화:)				
기획 분야					

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대중 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: 25,000원
	2.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 명서류(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) 1부	
	3.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 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 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.	
	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(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)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임차 등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	
	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	3. 사업자 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 청 인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영업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), 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, 사무소 소재지(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),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2.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,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3.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,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.

처리절차

